



業務協約書

삼육서울(부산)병원 ·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

상호 교류와 협력이

당사자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

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2018년 10월 17일

삼육서울(부산)병원

병원장 최명섭

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

회장 박재련



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(이하 ‘교장회’라 한다)와 삼육서울(부산)병원(이하 ‘삼육병원’이라 한다)의 협력을 통해 상호교류와 당사자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력내용】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① ‘교장회’ 협력사항

- 가. 교장회의 제 홍보매체를 통한 삼육병원 홍보
- 나. 회원이 삼육병원 제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‘교장회 홍보물’ 제작 · 제공
- 다. 프로모션 대상자 선정 제공

② ‘삼육병원’ 협력사항

- 가. 교장회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에 우대 할인 제공(상세내역은 “별첨”에 따른다)
- 나. 교장회 ‘홍보물’ 부착
- 다. 스승의 달 및 교장회 회원 이벤트 진행
(이벤트 진행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.)



제3조 【책임】

삼육병원의 과실로 의료행위 및 상거래 관계에 있어 수진자와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, 삼육병원이 법적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다.

제4조 【효력발생 및 유효기간】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5조 【협의조정】

본 협약서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6조 【비밀유지】

양 기관은 본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법과 양 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. 또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한다. 이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7조 【보관】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해 ‘교장회’와 ‘삼육병원’이 각각 1부씩 보관한



【 별첨 】

1. 혜택범위

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및 직계가족

2. 의료 서비스 내역 (삼육서울병원)

- ① 종합검진 할인 (50%), 일반 종합검진 할인 (20%)
- ② 공단검진 할인 (본인부담금 10%)
- ③ 진료비 할인 (비급여의 10%) 단, 1회 한도 적용(50만)
- ④ 산후조리원 할인 (20%)

※ 중복할인 불가(삼육리더스 상조회원, SDA 교인 등)

3. 장례서비스 내역 (삼육서울병원)

항목	삼육리더스 상조 가입자	일반 (상조 미가입자)	기타상조 가입자	세부사항
시설사용료	30%	30%	10%	빈소료, 안치료, 입관실 사용료
삼육리더스상품	80만원 할인			420만원 상품기준, 후불제 이용가능
일회용품	무료제공			150명분
근조화	무료제공			1개
발인행사장	무료제공	무료제공		1회-발인예배, 발인제사 시

4. 의료 서비스 내역 (삼육부산병원)

- ① 종합검진 교장회 상품 (30만원)
- ② 진료비 할인혜택 (비급여의 10%)